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 보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 79 호 2015. 8.13(목)

공 고

-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1
-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28

회 람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9

남원시 공고 제2015-984호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인 주거용 건축물 부분을 확대하여 열악한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 지원대상을 공동출입문과 공동조명시설(현관출입구) 보수까지 범위 확대(안 제3조)
- 분쟁조정 위원회의 구성원을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에 맞게 정비(안 제9조 및 안 제24조)
- 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안 제10조 및 안 제25조)

3. 의견 제출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장(참조 : 건축과장)
 - 우편번호 : 55738
 - 주 소 :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건축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9), 직접 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9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15. 8 .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건 축 과 장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인 주거용 건축물 부분을 확대하여 열악한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 지원대상을 공동출입문과 공동조명시설(현관출입구) 보수까지 범위 확대(안 제3조)
- 나. 분쟁조정 위원회의 구성원을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에 맞게 정비 (안 제9조 및 안 제24조)
- 다. 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안 제10조 및 안 제25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주택법」, 「임대주택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15. 8. 13. ~ 2015. 9. 3.(21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43조제8항”을 “「주택법」 제43조제9항”으로, “그 시행에 관하여”를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로 한다.

제2조 중 “남원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 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중 “① 공”을 “공”으로 하고, “이전년도”를 “이전 연도”로 하며,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65㎡미만”을 “65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며, “공동급수시설의 보수와 외벽도색에 한하여”를 “공동급수시설, 공동출입문, 공동조명시설(현관출입구에 한정한다)의 보수와 외벽도색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지원하고자 하는”을 “지원하려는”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고자 하는 때”를 “하려는 경우”로, “거쳐”를 “한 후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있는 때”를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결정된 때”를 “결정된 경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공동주택”을 “시장은 공동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하며, 제2호의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안전경제건설국장, 기획실장, 총무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상수도사업소장
2.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토목 전문가 및 주택관리사 등

제5조 제4항 단서 중 “한다”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주택업무 담당주사가”를 “주택업무담당이”로 한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제1항 중 “1월”을 “1개월”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없는 때”를 “없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 안”을 “한 번만 1개월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장하고자 하는”을 “연장하려는”으로, “입증”을 “증명”으로,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완료한 때”를 “완료한 경우”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선출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를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9조 제3항제4호 중 “주택관리관련”을 “그 밖에 주택관리”로, “경험이 있고 덕망”을 “경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전임자”를 “전임자 임기”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능)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 중 법 제52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제11조 제2항 중 “없을 때”를 “없을 경우”로 한다.

제12조 제1항 본문 중 “소집하고자 할”을 “소집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주택업무 담당주사가”를 “주택업무담당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를 “간사는”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있을 때”를 “있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받은 때”를 “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있는 때”를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작성된 때”를 “작성된 경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인정되는 때”를 “인정되는 경우”로,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없는 때”를 “없는 경우”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결을 거치지”를 “의결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불분명한 때”를 “불분명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건인 때”를 “사건인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계류 중인 때”를 “계류 중인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분명한 경우

제16조제1항제6호 중 “성립된 때”를 “성립된 경우”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수락한 때”를 “수락한 경우”로, “발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부결된 때”를 “부결된 경우”로, “있는 때”를 “있는 경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락한 때”를 “수락한 경우”로, “동일한”을 “같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원과 관련 공무원”을 “위원”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필요한 비용은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담에 대하여”를 “부담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요금액”을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개최한 때”를 “개최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는 조정사항에 대해”를 “위원회의 조정사항은”으로, “전원이”를 “모두가”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원

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구성)”을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출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각각”을 “사람으로 시장이 각”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 한다.

제2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5항 본문 중 “제4항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3년”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전임자”를 “전임자 임기”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등에 관하여는”을 “등은”으로 한다.

제27조 중 “명시되지”를 “규정되지”로 한다.

제28조 중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외”를 “조례 시행”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input type="checkbox"/> 공동주택관리 <input type="checkbox"/>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서(제14조 관련)				
분쟁대상 아파트명	아파트명		관리 사무소 전화번호	
	위 치		동수/세대수	동 세대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입주자 <input type="checkbox"/> 사용자 <input type="checkbox"/> 관리주체 <input type="checkbox"/> 입주자대표회의 <input type="checkbox"/> 리모델링조합			
피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입주자 <input type="checkbox"/> 사용자 <input type="checkbox"/> 관리주체 <input type="checkbox"/> 입주자대표회의 <input type="checkbox"/> 리모델링조합			
조정신청 내용				
신청취지 및 사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input type="checkbox"/> 제14조 제1항 에 따라 <input type="checkbox"/> 공동주택관리 <input type="checkbox"/> 제26조 <input type="checkbox"/> 임대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iv> <div style="margin-top: 20px;"> 남원시 <input type="checkbox"/> 공동주택관리 <input type="checkbox"/>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장 귀하 </div>				
첨부서류 : 1. 동의서 및 대표자 선정서류 2. 추천위원 명단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별지 제6호서식]

0년 이상 경과한 전용면적 65㎡ 미만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이 노후되어 시설물의 안전과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붕, 옥상, 공동급수시설의 보수와 외벽도색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 15. (생략)

제4조(지원방법)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 기간, 지원 대상, 범위 등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

 ----- 65제곱미터 미만 -----

---- 공동급수시설, 공동출입문, 공동조명시설(현관출입구에 한정한다)의 보수와 외벽도색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 15.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방법) ① -----

 ----- 지원하려는 -----

----- 시 -----

② -----
 ----- 하려는 -----

----- 경우 -----

----- 한 후에 -----

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5조에 따른 남원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 대상 사업을 심의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경제건설국장, 기획실장, 총무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건축·토목 전문가 및 주택관리사 등 2명 이상을 시장이 위촉한

-----.

③ -----
---있는 경우-----

④ -----
-----결정된 경우-----
-----해당-----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② -----
-----호선(互選)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하며, 제2호의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

그 연장의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보수 등 공사에 착수한 관리 주체는 당해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완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근거 및 정산내역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9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증명-----
붙여야-----.

④ -----
-----해당-----

-----따른-----

-----완료한
경우-----
-----붙여-----

-----.

⑤ (현행과 같음)

⑥ -----

-----등에-----

-----.

제9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5. (생략)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 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주택관리-----
-----경험-----

5.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기능) 분쟁조정 위원회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 사항을 조정·의결 한다.

- 1. 「주택법」 제52조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 2.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략)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⑤-----전임자 임기-----.

제10조(기능) 분쟁조정 위원회에 서 심의·조정할 사항 중 법 제52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삭 제
- 2. 삭 제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없는 경우-----
-----.

제12조(회의 등) ① -----
소집할-----

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제13조(간사)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③ 삭제

제14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 5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는 세대 구성원의 대표로서 1세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분쟁이 있을 때에는 소유자로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

----- .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간사) ① -----

--주택업무담당이-----.

② 간사는-----

-----.

③ 삭제

제14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

② -----

----- . -----

-----있을 경우-----
-----.

③ -----

--받은 경우-----

- 1. 법 제44조에 따른 당해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때
- 3.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때
-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계류 중인 때
- 5.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6. 조정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때

② (생략)

제17조(조정) ①·② (생략)

③위원장은 제1항의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하며, 조정이 부결된 때에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조정의 효력) ①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

1.-----해당-----

2.-----불분명한 경우-----

3.-----
-----사건인 경우-----

4.-----
-----계류 중인 경우-----

5.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분명한 경우-----

6.-----
-----성립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락한 경우-----

-----발급하여야-----

-----부결된 경우-----

-----있는 경우-----

제18조(조정의 효력) ① -----

-----수락한 경우-----

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제19조(비용부담) ①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관련 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용 부담 당사자 및 소요금액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위원회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하도록 한 후 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0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

-----같은-----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비용부담) ① -----

-----필요한

-----.

-----위원-----

-----필요한
비용은 예외로 한다.

②-----
-----부
담 중-----

-----.

③-----
-----필요한 금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
-----개최한 경우-----

라 작성 비치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사항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결서에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1조(수당) 분쟁조정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조정위원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각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조정사항은-----
-----모두가-----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

-----예외로 한다.

제24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호선(互選)한다.

③ -----사람으로 시장이 각-----
-----.
다
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1. ~ 5. (생략)

④ 분쟁대상 임대주택의 임차인 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위원은 각각 1명으로 한다.

⑤ 제4항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 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간 다음 각 호의 분쟁 사항을 조정·의결한다.

-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2. 관리비에 관한 사항
-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노력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④ 삭제

⑤ 위원의 임기는 2년-----

⑥ -----전임자 임기-----.

제25조 삭제

5.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가 합의한 사항

6.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전 환 가격에 관한 사항

7.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및 주택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26조(운영 등)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1
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② (생략)

제2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
되지 않은 심사위원회, 분쟁조
정위원회, 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운영 등) ① -----
-----등
은-----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준용규정) -----규
정되지-----

-----.

제28조(시행규칙) ---조례 시행-

-----.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5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남원시 공고 제2015-985호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됨에도 과도한 규제완화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도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한 규정 삭제(안 제18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항 및 「도로교통법」 제13조 제⑥항에 따라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위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의견 제출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장(참조 : 교통과장)

- 우편번호 : 55738

주 소 :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교통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8), 직접 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교통과(☎063-620-65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을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으로, “규정함으로써” 를 “규정하여” 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을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으로, “법률」” 을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로, “영이” 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정비“라 함은” 을 “정비“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을 “자전거정비소“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시민자전거“라 함은 남원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을 “시민자전거“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횡단도로“라 함은” 을 “횡단도“란” 으로, “「도로교통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를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로” 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주차장“이라 함은” 을 “주차장“이란” 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시의 책무)” 를 “(시장의 책무)” 로 하고,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로, “강구하여야” 를 “마련하여야”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 을 “제5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소요되는” 을 “드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변경하고자 ” 를 “변경”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및 제2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7조 중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이용시설” 을 “개선할 때 「자전거이용시설”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소요되는” 을 “드는”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1조제1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1조제2항에 따라” 로, “또는 설치하고자하는” 을 “또는 설치하려는” 으로, “대하여 노외주차장” 을 “노외주차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에 대하여” 를 “학교에”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내·외” 를 “시내·시외” 로 한다.

제10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9조에 따른” 으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9조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12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9조에 따라” 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안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한다.

제17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1조에 따라” 로, “자전거에 대하여” 를 “자전거” 로 한다.

제18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21조제2항 중 “호선한다” 를 “호선(互選)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 를 “사람으로”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의원 2인” 을 “의원”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정하는 자” 를 “인정하는 사람” 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번만”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여기간” 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 을 “(위원의 위촉 해제)” 로 하고,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 해촉” 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 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있을 때” 를 “있을 경우”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상실 하였을 경우

제23조제3호 중 “판단된 때” 를 “판단될 경우” 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1인” 을 “1명” 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 하되, 정기회의” 를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 하되, 정기회” 로, “임시회의” 를 “임시회” 로, “경우에 회의

를” 을 “경우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회” 를 “개의” 로 한다.

제26조 중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를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로,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를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로 한다.

제27조 중 “시행에 관하여” 를 “시행에”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관한 법률</u>」 및 <u>같은 법률 시행령</u> ----- ----- ----- ----- --<u>규정하여</u>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자전거 주차장 그 밖에 영이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p> <p>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p> <p>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p>	<p>제2조(정의) ----- -----<u>뜻은</u> ----- -----.</p> <p>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 ----- -<u>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 -----<u>「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 ----- -----.</p> <p>2. -----<u>정비</u>" <u>란</u> ----- ----- -----.</p> <p>3. "<u>자전거정비소</u>"란 -----</p>

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시민자전거"라 함은 남원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5. "자전거 횡단도로"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6. "자전거 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

-----.

4. "시민자전거"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 -----
-----.

5. -----"횡단도"란 -----
-----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로 ---
-----.

6. -----"주차장"이란 -----

-----.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

-----.

1. -----

----- 따라 -----

2. -----

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및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 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생략)

제4조(시의 책무) 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6조(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 제2항 및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생략)

----- 따라 -----

3. (현행과 같음)

제4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
----- 마련하여야 -----.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
----- 제5조 -----

-----.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 드는 -----

6.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③ -----
-----변경-----

-----.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 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

-----및 제2항에
따른-----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개선 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 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개선 기준의 설정) -----
-----개선할 때
「자전거이용시설-----

-----.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① -----

-----드는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 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5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기자전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③ -----

-----범위에

-----.

제17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제11조에 따라 -----

-----자전거 -----

-----.

제18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

-----.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총무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1.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
- 2. 3. (생략)
-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

-호선(互選)한다.

③ -----
---사람으로 -----

-----.

- 1. -----
--의원
- 2. 3. (현행과 같음)
- 4. -----
-----인정하
는 사람

제22조(위원의 임기) ① -----
-----한
번만 -----.
-----전임
자 임기의 남은 기간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 2. 제21조제3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 3. 사망·질병 등 그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 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수당과 여비 등) 시장은

----- 경우에는 위촉 해제 -----.

- 1. ----- 있을 경우
- 2. 제2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상실 하였을 경우
- 3. ----- 판단될 경우

제2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명 -----.

제25조(회의) ① -----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하되, 정기회 ----- 임시회 ----- 경우에 -----.

② ----- 개의 -----.

제26조(수당과 여비 등) -----

시 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참석한 공무원
이 아닌 위원에게 -----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
 -----.
 제27조(시행규칙) -----시행
에 -----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5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